

#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718
----------	------

2017년 4월 24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 : 2017년 4월 4일
- 다. 회부일 : 2017년 4월 6일
- 라. 상정일 : 제27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 
2017년 4월 24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조욱형)

### 가. 제안 이유

-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(법률 제14476호, 2016. 12. 27. 공포, 2017. 3. 28. 시행)함에 따라,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법령과의 관계,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, 제7조).
- 지방세징수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, 고액·상습체납자 체납액 기준, 징수교부금의 교부 기준, 체납처분 유예 대상 성실납부자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함(안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)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본 제정안은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제정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」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것임.

〈「지방세기본법」과 「지방세징수법」의 분법 개요〉

「지방세기본법」		제 정 안
총 칙		총 칙
납세의무		
부 과		
징 수	⇒	징 수
<u>체납처분</u>	⇒	<u>체납처분</u>
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		
납세자의 권리		
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		
법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		
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		
보 칙		

※ 「지방세기본법」은 총칙, 납세의무, 부과, 징수, 체납처분,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, 납세자의 권리,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, 법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, 보칙 등 총 10장에 본칙 25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, 국세의 경우 「국세기본법」, 「국세징수법」, 「조세범 처벌법」, 「조세범 처벌절차법」, 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서 모두 규율하고 있어 국세에 비하여 다소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어 법률체계 정비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된 것임.

- 현행 「지방세기본법」을 「지방세기본법」과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하는 것은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복잡하게 규정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집약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인 국민들과 징수 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여짐.

※ 「지방세징수법」입법 배경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징수·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,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,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- 본 제정안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·도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위임사항만 반영한 자치법규 기본안을 마련(2017. 1)하여 왔으며, 이 기본안에 맞추어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체계 및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·체계적인 운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**【시세 징수조례】 7개 조항**

- **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규정(4개 조항)**
  - 제3조(관허사업의 제한)
  - 제4조(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)
  - 제5조(징수교부금)
  - 제6조(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)
- **기타 조례의 목적,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(3개 조항)**

- 「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」 중 제1조(목적), 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, 제7조(허가 등의 제한), 제8조(징수교부금), 제10조(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), 제11조(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), 제13조를(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) 본 조례안 제1조부터 7조까지 조문이동을 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정비(4개 조항), 기타 조례의 목적,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(3개 조항)하는 것으로 조문과 관련한 비교 및 제정사유는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.

**<기본조례 및 징수조례 제·개정에 따른 조문이동 사항>**

현 행 (기본 조례)	제 · 개정안	
	(기본 조례)	(징수 조례)
(§1) 목 적	1조	1조
(§2) 다른 법령과의 관계	2조	2조
(§3) 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 등	3조	
(§4)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	4조	
(§5) 자동차 이전·말소 등록 자동차세 특례	(이륜자동차 반영)	
(§6) 서류송달의 방법	5조	
(§7) 허가등의 제한	→	3조
(§8) 징수교부금		5조
(§9) 교부금전의 예탁	6조	
(§10)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		6조
(§11)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		4조
(§12) 지방세심의위원회	7조	
(§13)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	8조	7조

- 다만, 「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」 제7조에서 「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안」 제3조로 이동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기준 금액(100만원)은 상위법(「지방세징수법」 제7조 제2항 및 제3항)에 따라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, 서울시 지방세 세입규모와 체납자들의 사업정지 및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기준금액 적정범위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.

「지방세징수법」 제7조 (관허사업의 제한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,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.

- ③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.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**(재석위원 6명, 전원찬성).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**

#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안

의안 번호	171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4월 4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(법률 제14476호, 2016. 12. 27. 공포, 2017. 3. 28. 시행)함에 따라,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법령과의 관계,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, 제7조)
- 나. 지방세징수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, 고액·상습체납자 체납액 기준, 징수교부금의 교부 기준, 체납처분 유예 대상 성실납부자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함(안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원안동의
- 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): 해당사항 없음
- 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협의완료
- 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: 원안동의
- (6) 갈등조정담당관(갈등영향분석평가): 원안동의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협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### 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17. 2. 9.~ 2017. 3. 1.)결과: 별도 불임
- (2) 신·구 조문대비표: 제정안으로 해당사항 없음
- (3) 비용추계 등 자료: 별도 불임

##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징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령과의 관계) 서울특별시 시세(이하 “시세”라 한다)의 징수에 관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관허사업의 제한)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.

제4조(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)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세 고액·상습체납자(시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)의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징수교부금) ①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%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

제6조(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)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”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재산세,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)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에 따른다.

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

서울특별시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.

제3조(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“「국세징수법」 제7조의4”를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8조”로 한다.

제2조제3항제1호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97조”를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39조”로 한다.

제2조제4항제3호 중 “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7조”를 “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 제31조”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80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91조”를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”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80조”를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업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61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32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입법예고결과 요약서 (시세 징수 조례안 제3조제3항 관련)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건	조 치 내 용
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세무2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3조(고액체납액의 부과징수 등)관련 구청장이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행한 처분에 대한 압류말소 등 체납처분에 관한 소송은 시에서 하도록 규정 신설 요구</li> <li>- 이관된 고액체납의 체납처분에 관한 권한은 자치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에 관한 소송을 자치구가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반영</li> <li>- 체납액에 대해 구청장이 체납자의 재 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진행 중 고액체납액에 해당되어 시로 이 관되는 경우, 등기부상 압류권자는 구청장이므로 시장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어 구청장이 행한 체납처분 에 관한 소송은 구청장이 행하는 것 이 바람직함.</li> </ul>